

사회복지법인 송원 이사회회의록

- 1) 회의 통보일자 : 2025년 01월 07일
- 2) 회의 개최일시 : 2025년 01월 16일 11:00
- 3) 회의 개최장소 : 법인 사무실
- 4) 회의 종류 : 임시 이사회
- 5) 회의 참석인원 : 대표이사 : 하윤석
이 사 : 이병문, 김명선, 조홍래, 정미경
- 6) 안 건 : 1) 당 법인 정관 변경의 건.
2) 당 법인 이사 임면의 건.
3) 당 법인 산하시설 도로 사용에 관한 건.

== 토의 내용 ==

대표이사 : (인사말생략) 이사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고 토의에 들어가다.

대표이사 하윤석 : (안건상정에 이어 의안 설명에 들어가다.)

당 법인은 2024년 3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제2항에서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송원의 정관을 보면 제8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특별회계” 를 두고 있으며, 임원의 명단은 설립시 임원 명단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명으로 작성되어 있어, 정관의 관련 일부 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배포해드린 정관 변경(안)을 참고하시면, 정관 제8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특별회계를 삭제·수정하고, 정관 [표2-3] 임원명단을 설립시 임원으로 변경·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 김명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특별회계를 정관에 두고 있으니 시설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설립시의 임원명단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출연자와의 특수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현행 임원명단은 법인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설립시 임원명단으로 작성되어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 이병문 : 네, 저도 김명선 이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네, 정관 제8조 중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특별회계를 삭제·수정하고, 정관 [표2-3] 임원명단을 설립 시 임원으로 변경·개정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 사 이병문 : 동의합니다.

이 사 일 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네, 다음은 당 법인 이사 임면에 관한 건입니다. 김명선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인 이사 사임을 표명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해야 하므로 추천하고자 하니 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사 정미경 : 먼저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네. 저희 법인을 위해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사회복지분야에도 잘 알고 계신 현재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장으로 계신 라정현 센터장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사 이병문 : 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거

라 생각하며 라정현 센터장님은 열의를 가지고 당 법인을 위해 활동해주
시길 기대하며 당 법인 이사 취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정미경 : 이병문 이사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네, 2025년 01월 16일부로 김명선 이사님은 사임, 라정현 센터장님은 당
법인 이사로 선임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 사 이병문 : 동의합니다.

이 사 일 동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다음 안건은 당 법인 산하시설 도로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당 법인
산하시설인 송원정신요양원과 인성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당 법인에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사용료가 31,168,155
원이며, 향후 14필지 토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가 연 3,897,381원입니다.
연간 사용료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 6필지만 사용하고 8필지에 대해서
는 지장물을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각 시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14
필지 중 6필지만 사용하였을 때 채경훈과 공유지분에 포함된 소유주 모두
의 사용료는 연간 1,337,856원입니다.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 정미경 : 네, 향후 사용할 6필지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각 시설에서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 결과 판결된
2012.3.17.부터 10여년간의 도로 임대료 31,168,155원은 법인의 자금사정
이 어려워 지불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 이병문 : 기존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법인의 재정상 지급이 어려워 관할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해 보았으나 법인 자산에 대한 것에는 지원이나 관여
를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네, 시와 구에서 도로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협의를 해 보았으나 법인의 자산에는 예산 지원이나 보조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지나간 10여년간의 임대료는 현재 법인의 재정상 지불할 수 없으니, 소유권자인 채경훈씨에게 법인의 지급능력이 생기면 지불하겠다는 요청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산의료재단에 협조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경훈과 공유지분 소유주 모두에게 향후 도로 14필지 중 6필지만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향후 6필지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매년 지급하되, 도로를 사용중인 시설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 사 김명선 :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임원분들 모두 다방면으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 일 동 : 김명선 이사님의 의견에 제청합니다.

대표이사 하윤석 : 그럼 소유권자인 채경훈씨에게 지나간 10여년간 임대료 지급과 향후 지급 할 임대료에 대한 협의를 하되, 지나간 10여년간의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울 경우 우산의료재단에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매년의 도로사용료는 각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표이사 하윤석 : 본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안통과를 선언하고, 폐회를 구하다.

이 사 일 동 : 이에 동의하다.

대 표 이 사 : 참석이사 전원 이사회회의록에 기명 인감날인하다.

2025. 01. 16. 11:30

대표이사 : **곽을석** (인)

이사 : **이병근** (인)

김미경 (인)

김명선 (인)

조흥래 (인)

감사 : **송권우** (인)

정정시 (인)

